



규정심의위원회 운영규칙

규정번호	5-0-1
제정일자	2007.09.01
개정일자	2017.03.01
개정번호	Ver.7
총페이지	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규정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상위법규 및 학칙에의 저촉, 학내 다른 규정과의 상충 여부 <개정 2017.03.01.>
2. 규정의 체제 및 형식
3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위원회 위원은 각 행정부서 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이 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당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안전 제출 등) ① 업무 소관부서가 규정관리규칙 별표 서식에 따라 입안한 규정안을 부의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1. 시행일이 9월 1일인 경우 7월 말까지
2. 시행일이 3월 1일인 경우 1월 말까지

② 위원장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해당 규정의 업무 소관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01.>

③ 간사는 ①항에 의하여 제출된 안전을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④ 규정안을 입안한 부서의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안전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7.03.01.>

- 1. 정기회의는 매 학년도 8월과 2월 중에 소집한다.
- 2. 임시회의는 긴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.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